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1.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2. 추천 의뢰 기관 : 서울시 자원순환과-2811호(2021.2.17.)

## 3. 추천 인원 : 5명(구의원 3명, 전문가 2명)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sup>1)</sup>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 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 :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9기 위원 위촉기간: 2021.4.26.~2023.4.25.)

## 4. 추천 위원(안)

- 강 명 숙 의원
- 김 영 미 의원
- 이 민 석 의원
- 임 삼 진 원장(전문가)
- 최 정 현 교수(전문가)

1) 마포구의회 3명, 고양시의회 1명

□ 자격요건(법률 시행령 별표2)

1.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